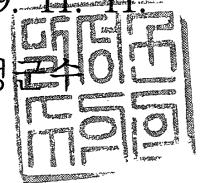


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1n6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11. 11.

제출자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2020년도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: 25,099천 원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,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.5/10,000를 출연금으로 배정

- 붙임 1. 출연심의 요구서.
2. 사업부서 검토의견서.
3. 출연기관 현황.

출연 심의요구서

기 관 명	한국지방세연구원					
출연대상	○ 일반현황 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- 주요사업 ·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·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					
출 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25,099천원(군비 25,099천원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					
	구 분	2019년도	2020년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 감 액
			연구원 요구액	부서 산정액	증 감	
	출연금 (군비 100%)	23,258	25,099	25,099	-	1,841
출 연 필요성	○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					
근거법령	○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○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					
사업부서 검토의견 (중 평)	○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, 네트워크포럼 운영,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, ○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,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, ○ 특히,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(총12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.					
첨부자료						

사업부서 검토의견

1 부서 검토 의견

< 이사회 결산감사 >

- 결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, 2018년 사업 및 예산집행이 승인된 사업계획 및 편성에
산에 따라 이루어졌고, 지방세재정포럼을 창설하는 등 재정분권을 위한 네트워크를
강화하고,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이 추진되었음. 특히 지방세
쟁송사무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, 청사매입 차입금의 조속한 상환과 자
체수익 확대를 위한 수탁용역 확대가 필요함

< 운영실적 평가 >

- 조직을 개편하여 지방세교육과 연구기능을 강화하였으며,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
하여 각 사업을 계획에 맞추어 재정비하고자 하였음. 연구과제의 수요조사와 선정
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나, 연구수행 결과가 법률 제개정 등 실질적으로 정책
에 기여하도록 해야함. 지방세교육관의 설립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
였으며, 단년도 사업이 아닌 중장기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. 채용의 객
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,
사회적 포용을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과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등에도 노력이 필요함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
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5에 해당하는 금액을
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 예산편성이 필요함.
-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
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,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, 지방세 쟁
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 등의 사업 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
으므로 출연이 필요함.

3 출연금 검토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결산 지방세	2018년 결산 보통세 (C)	2020년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
출연금	167,330,215	167,324,855	25,099	25,099	0	1,841

출연 기관현황

설립근거	「지방세기본법151조」 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			전화번호 : 02-2071-2726		
				홈페이지 : www.kilf.re.kr		
주요연혁	- 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		기관형태	출연		
인원현황 (2019년 8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임시직·파견	
	77명		66명 (본부장2, 연구위원21, 사무직28)		11명 (위촉연구원2, 파견공무원9)	
임원 (2019년 8월 현원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	주요경력		임기	
	이사장	허성관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	2017.12.22. ~ 2020.12.21.	
	부이사장	황명선	충청남도 논산시장		2019. 2.28. ~ 2020. 2.27.	
	이사	(공석)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	당연직	
	이사	이용철	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		당연직	
	이사	김하균	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		2019. 2.28. ~ 2020. 2.27.	
	이사	이용석	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		2019. 2.28. ~ 2020. 2.27.	
	이사	김기세	경기도 자치행정국장		2019. 2.28. ~ 2020. 2.27.	
	이사	김장호	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		2019. 2.28. ~ 2020. 2.27.	
	이사	박상신	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		2019. 2.28. ~ 2020. 2.27.	
	이사	김항섭	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		2019. 2.28. ~ 2020. 2.27.	
	이사	윤여일	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		2019. 2.28. ~ 2020. 2.27.	
	이사	금재덕	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		2019. 2.28. ~ 2021. 2.27.	
	감사	김영빈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	당연직	
	감사	노홍래	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		2018. 2. 28. ~ 2020. 2. 27.	
주요기능	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					
설립자보급 (단위:백만원)		1 (직전연도말 기준)			총자·출여액 (단위:백만원)	
					57 912 (설립이후 2018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)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7	2018	2019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8.12.31기준	자산 18 188 (자산 총액)
	예산액	9,986	13,313	12,759	부채 4 456 (부채 총액)	
	지자체 지원액	9,551	12,102	10,843		자본 13 731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18.12.31기준	총수익				총비용	당기순이익
	11,166				8,603	2,563

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	구분	출자	
주관부서	세무과		출연	25,099천원(군비)

☐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-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

☐ 출연개요

- 연구원 운영 예산('19년: 12,759백만 원) 중 10,844백만 원을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
-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

☐ 산출기초

- 출연액 : 25,099천 원
- 전전년도 보통세의 1.5/10,000를 출연
 - 출연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152조, 시행령 제94조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출연금	126	8	13	13	14	16	18	21	23

☐ 기대효과

-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☐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, 지방재정·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

참고

상위 및 관계 법령(발췌)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5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<2013.7.16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4.5.28.>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